

1. 안 건 명

- 서울특별시마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11년 11월 17일
-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 2011년 11월 22일

4. 근거법령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

[검토보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동 개정조례안은 「측량법」, 「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이 폐지되고, 3개 법이 통합되어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종전 「측량법」 제58조를 근거로 제정된 조례를 통합된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알맞게 변경하고자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 >

- (1) 안 제1조(목적)에서는 “「측량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를 통합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로 개정
- (2)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로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개정
- (3) 안 제8조(지명의 조사)에서는 “제6조에 의한 지명의 조사”를 “제7조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로 개정
- (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 및 간결한 용어로 정비

< 검토의견 >

- 동 조례안은 「측량법」, 「수로업무법」 및 「지적법」이 폐지되고, 2011. 4. 12 타법 개정되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2011. 10. 13 법률 제10580호로 시행됨에 따라 종전 「측량법」 제58조를 근거로 제정된 조례를 통합된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